

#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지침

## 제1조(목적)

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8조에 따라 메리츠자산운용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고 한다)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적용범위)

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, 그 외 업무 관련 법규(이하 “관련법규”라 한다)와 해당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.

## 제3조(용어의 정의)

이 지침에서 “수수료”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업, 회사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,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

1. 보수 :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
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 :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
나. 성과보수 :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(법 제86조, 법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-65조에 해당하고 집합투자계약에 정의된 경우에만 수령가능)을 말한다.

다. 판매회사보수 :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영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
2. 수수료

가. 판매수수료 :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 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.

나. 환매수수료 : 집합투자자가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을 말한다.

다. 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(또는 보수) :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업무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가 투자자문계약서 및 투자일임계약서에 따라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. 또한 그 투자자문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받는 성과수수료를 포함한다.

#### 제4조(수수료의 부과기준)

-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, 비용과 수익의 수준 및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
- ③ 각 수수료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1. 성과보수는 법 제86조, 동법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-65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을 집합투자규약 등에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.
  2. 판매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1. 다만,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2년을 넘는 시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이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그 시점까지는 100분의 1에서부터 1천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. 또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  3. 판매수수료는 납부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2 이하로 한다.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  4.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환매대금을 지급할 때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.

#### 제5조(집합투자업,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있어서 수수료 부과절차)

- ① 회사가 집합투자업,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·투자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(또는 보수)의 비율 또는 금액, 그 부과절차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② 회사는 새로운 유형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검토와 승인 등 신상품 개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다루는 상품심의위원회에서 그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또는 보수의 비율 또는 금액에 대하여 심의, 의결한다. 다만 기존 상품과 운용상의 중요 변경이 없는 유사한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등을 신규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장의 합의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.
- ③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④ 회사는 총비용의 조절 또는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신탁업자,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.
- ⑤ 회사는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·투자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보수 또는 수수료 이외에 투자자로부터 추가적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

#### 제6조(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에 있어서 수수료 부과절차)

- ① 투자자문수수료 또는 투자일임수수료의 수준 및 계산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순자산총액에 투자자와 합의한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

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투자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수수료 지급주기 및 지급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③ 회사는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수수료를 추가로 받지 아니한다.

### 제7조(수수료의 인상)

①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에서 정한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회사는 투자자문수수료 또는 투자일임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의 변경 후 인상하여야 한다.

### 제8조(설명의무)

회사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,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함께 이 지침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### 제9조(투자광고)

① 회사는 투자광고(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)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 지침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② 회사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, 판매회사, 신탁업자,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받는 보수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
### 제10조(공시 및 통보)

회사가 이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한 보수와 수수료는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3조 및 제30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비용과 판매수수료 현황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.

## 부 칙

### 제1조(시행일)

이 지침은 201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